지식경제부	보도참고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
'12년 6월 15일(금) 11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: 석유산업과 문신학 과장(2110-4890), 전동욱 사무관(5457)
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성창훈 과장, 김현영 사무관(2150-2774)
조세특례제도과 박춘호 과장, 이종수 사무관(2150-4131)
산업관세과 김경희 과장, 문경호 사무관(2150-4431)
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김광용 과장, 홍삼기 서기관(2100-3926)
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 이창섭 과장, 이갑규 소방정(2100-5355)
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노상섭 과장, 손주익 사무관(2023-4382)
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윤창호 과장, 김광일 사무관(2156-9752)

『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대책』
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

◈ 4.19일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치중 즉시시행 사항은 기 조치완료, 시행령 개정 사항은 7월중 시행, 법률 개정사항은 9월 정기국회 상정 계획

◈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유가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촉진 방안 지속 추진중

알뜰주유소

□ 알뜰주유소는 6.14일 현재 554개(자영 141, 도로공사 65, 농협 348개)가 운영중이며, 상반기내 600개, 연말까지 1,000개 목표로 지속 추진중

○ 4.19일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 대책중 알뜰주유소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한시적 금융 재정지원 방안을 4월부터 시행하여,

- 운전자금 보증 23억원(11개소) 및 외상거래 자금 9억원(6개소) 지원, 시설개선 자금 44억원('12예산 79억원의 56%) 집행(5월말)

○ 또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/법인세 및 재산세 일시 감면*은 국회 일정등을 고려하여 하반기 추진 예정(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 상정)

*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확대(10%→20%), 재산세 2년간 50% 감면

□ 서울지역은 높은 지가 및 직영주유소 위주의 시장 구조 등 진입장벽으로 인해 알뜰주유소 실적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나,

* 6.14일 현재 서울지역 6개 개소, 그 외 5개 주유소가 추가 계약 체결

○ 시설개선자금 확대 지원(정액 5천만원), 대형주유소 사업자 참여 유도, 석유공사 직접매입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 추진중에 있음

○ 서울지역 확산을 위한 공영주차장 주유소는 서울시가 추천한 3개소 중 시행 가능한 1개소(화랑대역) 우선 추진

* 법제처·국토부와 협의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(6월중) 및 인허가 완료 후 공사(40일) 가능 → 8월초 개점예상

□ 그간 추진된 알뜰주유소는 해당 지역에 저렴한 석유제품 공급은 물론, 주변 주유소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

○ 알뜰주유소는 6.13일 기준, 지역 평균 대비 휘발유 38.3원, 경유 45.6원 저렴, 전국 평균 대비 각각 41.8원, 50.4원 저렴하게 판매

○ 아울러, 알뜰주유소가 입지한 지역의 평균가격 인상폭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게 형성되고 있어 알뜰주유소에 의한 가격견제 효과 관측

* 상승기(2.10일~4.18일)에는 전국 평균가격(휘 82.1원↑, 경 43.6원↑) 대비 알뜰주유소 입지지역 평균가격(휘 63.9원↑, 경 22.1원↑) 인상폭이 휘발유는 18.2원, 경유는 21.5원 낮게 형성

* 하락기(4.19일~6.13일)에는 전국 평균가격(휘 △83.7원, 경△81.8원)과 알뜰주유소 입지지역 평균가격(휘 △83.4원, 경유 △82.1원) 하락폭이 비슷

혼합판매

□ 4.19 발표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우선 정비하였고,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정유사 및 주유소와 협의중

○ 공정위는 4월에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불공정거래의 예시로 포함하여 불공정거래심사행위지침 개정을 완료하였고,

- 또한 4월에 혼합판매 거래기준을 변경하여, 향후 정유사-주유소간 계약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음

○ 지경부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(석대법) 시행령에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여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규제심의중이고,

- 혼합판매가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음을 명시한 예외규정 표시를 위한 석대법 개정안을 9월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임

□ 현재 정유사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중이며, 6월중 협의를 완료한 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, 이를 근거로 개별 계약변경을 단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혼합판매를 실시할 계획임

* 시장에서는 7월부터 계약을 변경하는 주유소를 시작으로 혼합판매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

전자상거래

□ 7월1일부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석유수입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예정임

○ 지경부는 석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에 대해 석유수입 부과금(리터당 16원)을 환급할 예정(7월1일 수입분부터 적용)이며,

- 수입 경유에 대한 바이오 디젤 혼합의무(현재 수입사별 경유 수입량 15만㎘초과시 적용)를 면제하는 지경부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할 예정임(7.1일부터 시행)

○ 기재부는 수입사 등 공급자 세액공제율을 상향(0.3%→0.5%)하기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,

-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할 예정임(7.1일부터 시행)

□ 또한 주유소들이 쉽게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간소화하였고, 안내를 위한 KRX 콜센터도 운영

* 가입서류 간소화(인감날인 및 인감사본 제출 폐지 등), 최소매매수량요건 완화(20만→10만ℓ), 거래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(정유사·석유공사 → 정제업자·도로공사·농협·직전주 4만리터 이상 거래자), 배송조건 협의·변경 허용 등

석유유통시장 혁신

□ 석유유통구조 개선정책의 지속적·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월에 범부처적 석유유통지원센터[1]와 석유공사내 유통사업 추진단[2]을 출범하였음

1) 지경부, 기재부, 농식품부, 행안부, 금융위, 국토부, 공정위, 소방청(사무국 : 석유공사)
2) 기존 7명(팀)에서 24명(처) 규모로 확대 완료, 유통사업팀, 유류마케팅팀, 주유소운영팀

□ 석유제품 용기(캔) 판매 등 새로운 주유업태 도입 검토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T/F를 구성하여 안정성 및 경제성을 점검하고 있음

□ 또한, 소시모 등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가격결정구조 및 변경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,

○ 소시모 주관으로 주유소 가격결정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(기재부, 6월~7월),

○ 가격결정 요인가 효과 분석, 국제유가의 국내기름값 반영 속도(가격 비대칭성), 정부 정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 연구할 계획임